#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7

발의연월일: 2020. 7. 22.

발 의 자: 문진석·박영순·서영석

송갑석 • 안민석 • 윤재갑

이상헌 · 이정문 · 이형석

조오섭ㆍ최강욱 의원

(11일)

#### 제안이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기준으로 정하고('18. 11.) 있는 조종사 등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기 위한 국내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항공업무 수행범위 준수 의무화(안 제4 ()조)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에게 제한받은 항공업무 범위를 준수하도록 제도를 마련

함.

나. 건강증진활동계획 수립ㆍ시행 의무화(안 제41조의2 신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기준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소속 조종사 등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제도를 마련함.

다.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건강증진활동 미이행 시 제재근거 마련(안 제86조, 제87조, 제91조)

조종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활동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사용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정지를 하거나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제 도를 마련함.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한정받은 항공업무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등은 매년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강증진활동계획"이란 항공안전의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교통관제사와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말하고, 그 계획의 내용과 수 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

제43조제1항제31호를 제3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를 제31호로 하며, 같은 항 제12호부터 제29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30호의2를 제32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에 따른 항공기의 조종연습 또는 제4 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한 경우

제43조제2항제4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5호, 제6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한 항공업무의 범위의 조건을 준수 하지 않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의 조종연습 및 제47조 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
- 7.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에 따른 항공기의 조종연습 또는 제47조 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한 경우

제8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제1항 중 "제86조제1항제2호"를 "제86조제1항제1호의2 또는 같 은 항 제2호"로 한다.

제91조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으로 실 시하는 건강증진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한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 및 제4 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	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①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⑤ 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
	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
	우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
	급받은 사람은 한정받은 항공업
	무의 범위를 준수하여야 한다.
<u>⑤</u> · <u>⑥</u> (생 략)	<u>⑥</u> ・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u>&lt;신 설&gt;</u>	제41조의2(건강증진활동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는 매년 소속 항공교통관제
	사를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
	사업자 또는 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등은 매년 소속 운항승
	무원을 대상으로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
	강증진활동계획"이란 항공안전
	의 위험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제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 증명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자격증명등의 효력정지를 명할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한다. 1. ~ 11. (생략)

<u>연습 또는</u> 교통관제

12. ~ 29. (생략)

항공교통관제사와 운항승무원의
건강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말하고, 그 계
획의 내용과 수립·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u>한다.</u>
]43조(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

43	조	=()	자.	격	증	명	•	,	항	공	- Հ	] ;	체	검	入	}
증	명	의	Ž	튀 _	<u> </u>	등	-)	(		-					_	_
							-			_					_	_
							- —			_		- —			_	_
							- –			_		-			_	_
							- —			_		- —			_	_
							-			_		-			_	_
							-			_		-			_	_
							_			_		_				_
							- —			_		- —			_	_
							- —			_					_	_

- 1. ~ 11. (현행과 같음)
- 12.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 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제46조에 따른 항공기의 조종 연습 또는 제47조에 따른 항공 교통관제연습을 수행한 경우 13. ~ 30. (현행 제12호부터 제2

 30. (생 략)

 30의2. (생 략)

 31.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종사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 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 사증명의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5. (생략)

<신 설>

9호까지와 같음)
<u>31.</u> (현행 제30호와 같음)
<u>32.</u> (현행 제30호의2와 같음)
<u>33.</u> (현행 제31호와 같음)
②
<u>.</u>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한 항공업무의 범위의 조건을준수하지 않고 항공업무(제46조에 따른 항공기의 조종연습및 제47조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경우
- 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 7.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6. (생략)

③ • ④ (생 략)

제86조(항공교통업무증명의 취소 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 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 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취소 하여야 한다.

1. (생략)

<신 설>

2. ~ 8. (생략)

② (생략)

	제46조에	따른	항공	기의	조종
	<u>연습 또는</u>	- 제47	조에	따른	항공
	교통관제	연습을	수하	행한 7	경 <u>우</u>
8	. (현행 저	6호와	같음	<u>)</u>	
(2	0.40 (점	해고.	가스)		

(·	9) -	4	( 17	8 4	E	D			
स्री8	86조	:(항	공교	1통업	무	증대	경 의	취	소
Ţ	등)	1						 	
-								 	
-								 	
-								 	
-								 	
-						- – –		 	
-								 	
_						- – –		 	
-								 	

- 1. (현행과 같음)
- 1의2. 제41조의2제1항을 위반하 여 소속 항공교통관제사를 대 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활 동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 니한 경우
- 2. ~ 8.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제87조(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 무증명을 받은 자가 제86조제1 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항공교통업무 제공 을 정지하면 비행장 이용자 등 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 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업무 제공의 정지처분 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 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저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9호 또는 제4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신 설>

제86조제1
항제1호의2 또는 같은 항 제2호
②·③ (현행과 같음)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
명 취소 등) ①
1. ~ 10. (현행과 같음)
<u>10의2. 제41조의2제2항을 위반</u>

	하여 소속 운항승무원을 대상
	으로 실시하는 건강증진활동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
	<u>한 경우</u>
11. ~ 49. (생 략)	11. ~ 4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